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창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방식을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의 교부 수수료,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에 확대 적용함

3. 주요내용

-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, 등기 신청수수료를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확대하여 적용함(안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)

4.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 중 “현금으로”를 “현금 또는 신용카드로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단서 중 “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,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수수료”를 “지방법원,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”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제1항 본문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,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,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,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경우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들이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⑤ ~ ⑩ (생략)

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,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,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법원,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.

④ 제1항-----

⑤ ~ ⑩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	
연락처	(02) 3480-1394